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- 131호

『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12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11248, 2012. 2. 1. 일부 개정, 2012. 8. 2 시행)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여 광역자활센터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의기구 설치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함.
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용어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광역자활센터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과 센터의 설치 및 구성, 사업 등 세부적으로 규정함(안 제2조제2호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 등)
- 나. 민관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자활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함(안 제8조제7호)
- 다. 법 개정예에 따라 지역자활센터, 자활기업 등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(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,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등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2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insuk333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자활사업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2. “광역자활센터”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인천광역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.
3. “지역자활센터”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군·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.
4. “자활근로사업단”이란 보장기관 혹은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의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.
5. “자활기업”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.
6. “자활사업실시기관”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자활지원계획의 수립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2.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3.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법령의 범위에서 자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2.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시장은 「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제7조(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자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.
- ③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,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⑤ 센터장은 조직·인사·회계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센터의 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·상담·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2. 광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
3. 광역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·창업 지원 및 알선
4.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지원
5.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
6.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·경영 지도
7.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 설치 운영
8.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센터의 지원)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) ① 센터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.

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·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일반인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1조(센터의 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2조(자활사업 지원)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
2.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·상담·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
3.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
 4.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·경영지도
 5.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지원
 6.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 2. 관계법령에 따른 국·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
 3.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 4.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
 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- 제15조의3(광역자활센터) -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- 제18조(자활기업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】

제15조의3(광역자활센터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법인등"이라 한다)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·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
 2. 시·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·창업 지원 및 알선
 3.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
 4.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
 5.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·경영 지도
 6.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-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·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,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법인등"이라 한다)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·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
2.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, 상담,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3.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
4.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·경영 지도
5.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 지원
6.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

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지역자활센터의 설립·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2. 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임대
3.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
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·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,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자활기업)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상의 사업자로 한다.

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,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2. 국유지·공유지 우선 임대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

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임.

4. 작성자

- 문화복지위원회 신 현 환 의원